

안전정보공개자료

1 안전보건경영정책

- 1.1 LF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,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1.2 LF는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,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관리감독자 지정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.
- 1.3 LF는 매년 안전보건 업무이행에 관한 이사회(2월) 및 경영책임자 보고(반기)를 실시하고 있으며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회 등을 통하여 종사자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 관련법규 파악 및 준수평가 등을 실행하여 안전보건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1.4 사내관련규정: SHE-S-01-01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SHE-P-01-01 중대산업재해 관리절차 지침


2 안전보건경영방침

안전 보건 경영 방침

(주)LF는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문화의 정착으로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한다.

1. (주)LF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다.
2. (주)LF는 안전보건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,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안전보건문화를 정착한다.
3. (주)LF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예방대책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, 이를 통하여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.
4. (주)LF 전 임직원은 안전보건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보건 중심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.
5. (주)LF는 안전보건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,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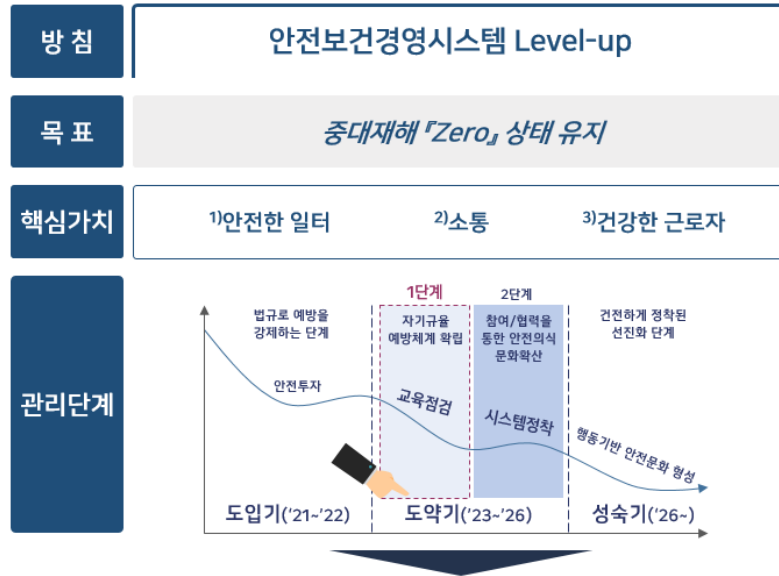
(주)LF 대표이사



3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목표(3단계)

3.1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도입기 및 도약기, 성숙기 등 3단계로 구분하였고, 3대 전략목표 및 12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.

3.2 '24년은 전사 안전관리시스템 통합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및 관리체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<중장기 안전보건 목표>

전략목표	전략과제(3대 전략목표 및 12대 과제 도출)
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근거한 안전보건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및 실행 2. 전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(인력, 시설, 장비 및 예산 등) 3.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사내기준 적용 4. 사내기준에 근거한 준수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
2 사고예방 활동전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사내 유해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조치 (위험성평가 및 현장 정기점검, 시설투자 등) 6. 도급/용역/위탁 대상 업무평가 및 작업허가제 도입 (4대 위험작업 선정) 7. 임직원 보건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8.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강화
3 안전문화 정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. 안전보건 인식문화 확산 및 수평전개 (Mind set) 10. 안전보건교육 준수 및 내실화 11.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교육 훈련 (역량강화) 12. 협력업체 안전보건 Communication 체계 구축 유지

3.3 사내관련규정: SHE-P-02-03 이사회 보고 지침

4 주요 유해위험 파악 및 관리활동

4.1 LF는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. '23년에는 평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및 전기안전으로 구분하였으며,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약 340건(전년대비 ▲약 20% 감소)에

- 대하여 100% 개선 완료하였습니다. 대표적 개선사례로 기계 및 기구 방호조치,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개선, 휴먼에러 개선, Floor Outlet Box 및 멀티콘센트 관리개선 등이 있습니다.
- 4.2 유해화학물질 및 소음 등 노출 근무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, '22년부터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습니다.
- 4.3 본사에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고, 체계적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활동내역에 대한 업무평가를 이사회 및 경영진이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(분기) 및 안전보건협의체(매월) 등을 통하여 종사자 의견청취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4.4 매월 2주차 목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였고, 해당 점검일에는 주어진 주제(전기, 소방, 화학물질 등)에 따라 내 주변의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를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하여 확인된 유해위험요소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한 개선 및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습니다.
- 4.5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- 4.5.1 협력업체 대표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주요 이슈에 대한 Webinar 실시
 - 4.5.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 안내 및 사내 가이드 배포
 - 4.5.3 합동 비상대응훈련 실시
- 4.6 안전의식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신규입사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/보건관리자,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직책자는 별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, 중대재해 또는 자연재해 등 발생 시 대응력 향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기대응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4.7 건강관리실(Health care center) 운영을 통하여 사내 임직원에게 대한 건강상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, '23년 건강진단 100% 실시 및 건강이상자 100%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. 그 외 이상군 분석, 체성분측정, 당화혈색소 및 콜레스테롤 측정, 스트레스 측정 장비 등을 구축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4.7.1 '23년 10월에는 임직원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.
 - 4.7.2 마음건강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와 언제든지 상담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4.8 사내관련규정
- 4.8.1 SHE-P-10-01 위험성평가 지침
 - 4.8.2 SHE-P-31-01 작업환경측정 지침
 - 4.8.3 SHE-P-02-01 안전보건체계 지침

4.8.4 SHE-P-02-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침

4.8.5 SHE-P-30-01 건강진단 지침

4.8.6 SHE-P-03-0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지침

4.8.7 SHE-P-01-05 관계법령준수평가 지침

- 5 산업재해 관련지표: 주기적 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안전점검,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,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격 수급인 평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활동과 노력이 반영되어 최근 3년('21~23년)간 LF 사업장(협력업체 포함)에서는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

5.1 사내관련규정: SHE-P-06-01 산재처리절차 지침

- 6 협력업체 안전보건 고충채널 운영: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청취를 위한 사내절차를 마련하였고, 해당 절차에 따른 주기적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은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6.1 도급사업 협의체: 분기 1회 이상

6.2 정기점검: 매주 1회 이상

6.3 '23년 주요 개선사례

6.3.1 협력업체 휴게실 시설 추가 마련 및 안전점검 실시(매년)

6.3.2 협력업체 지게차 운전자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(경고 및 알람)

6.3.3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등

6.3.4 화재예방을 위한 물류센터 작업등 교체 및 자동소화기능이 있는 멀티콘센트 지급

6.3.5 여름철 작업장 내 대형선풍기 추가 설치, 포도당 비치 등 폭염대비 조치 등

6.4 사내관련규정: SHE-P-05-01 도급사업안전관리 지침

7 협력업체 안전역량 평가 및 활용

7.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협력업체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,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.

7.2 사내관련규정: SHE-P-05-02 적격수급인선정평가 지침

7.3 평가기준:

평가항목			평가기준
안전보건관리체계	1	일반원칙	도급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
	2	계획수립	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
	3	역할 및 책임	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
실행수준	4	위험성평가	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
	5	안전점검	안전점검 및 모니터링(보호구 착용확인 포함)
	6	이행확인	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(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)
	7	교육 및 기록	안전보건교육계획 및 기록 관리
	8	안전작업허가	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
운영관리	9	연락체계	도급 및 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
	10	위험물질	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
	11	비상대책	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
재해발생수준	12	재해현황	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